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읍읍읍읍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관내 00면 00리 000-0번지 일원에 ○○ 읍읍읍읍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15.6.22. (주)○○ 대표 √/√/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5.6.26.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서원건축물에서 건축물을 받치는 기단의 경우 조상을 모시는 사당 등 격이 높은 주요건축물에 대하여는 화강석기단으로 시공하고, 격이 떨어지는 부속건축물의 경우 자연석기단으로 하여 건물격식과 기능을 고려하여 기단형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본 건축물의 경우 강당 및 관리사 등 부속건축물까지 화강석기단으로 과도하게 계획되어 기단형태 적용이 적절하지 못해 자연석기단으로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00,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되고,

공사장 외곽에 설치하는 조립식가설울타리의 경우 당초 계획한 370m보다 짧은 210m(감 160m)를 설치하여 공사비 0,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조치 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2017. 7. 14.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공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과
내 용

○○군 △△△△과 에서는 “☆☆☆☆ ☆☆☆☆ 조성공사”를 ◎◎건설(주) √√√과 계약금액 0,000,000천원을 2013. 8. 5 계약하여 2013. 8. 6 공사 착공(2016. 12. 20 준공 예정)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본 공사 추진에 필요한 성토용 토사중 외부 반입토는 14,644m³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사토 2,633m³)를 현장에 유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장발생토 2,633m³를 사토처리 함으로 인하여 사업비 00,000천원 정도를 낭비 하였으며,

또한, 한강대 테크설치공 테크설치를 위한 바닥철골설치에 대하여는 품셈의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잡철물 제작설치로 과다 적용하여 사업비 00,000천원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감액00,000천원) 및 낭비(00,000천원)하는 등 공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관내 ○○읍 00리 000-0번지 일원에 ○○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16.6.17. ☆☆☆☆(주) 대표 √√√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6.6.23.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동 부지 내 기존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 00,000천원 감액조치가 필요하고,

먹매김 및 광파기 등으로 건물의 평면형태와 높이를 정해 시공하여 별도의 규준틀 설치가 불필요 함에도 설계에 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철근 가공물량은 실제가공이 이루어지는 물량만 반영되어야 함에도 철근 전체 물량이 반영되어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계상 되어 있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16.7.14.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공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ㄲㄲ건설(주) √√√ 과 계약금액 0,000,000천원으로 2013. 11. 20 계약하여 2013. 11. 22 공사 착공(2016. 11. 12 준공예정)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비탈면 안정성검토는 현장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공성,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비탈면 경사 및 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암 절취 비탈면의 표준경사(발파암 1:0.5)를 적용하였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 비탈면 사면보강공 설계 부적정

본 공사 암 절취 사면보강공에 반영된 락볼트공(Rock Bolt)¹⁾ 54공, 270m 및 앵커공(Anchor)²⁾ 19공, 314m 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본 공사의 비탈면 경사는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표준경사로 1:0.5를 적용하여 최적 안정각으로 설계되어 암 절취면에 대한 별도의 비탈면 사면보강이 불필요 함에도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의 산출내역이 없이 이를 내역서에 반영하여 사업비

1) 락볼트공 : 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서 정착시키는 구조로 너트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공법.
2) 앵커공 : 암반 내에 뚫은 보링 구멍에 강봉이나 PC 강봉을 삽입하고, 정착력이 있는 암반 부분에 모르타르나 수지를 주입하여 채운다음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 앵커 머리부를 금속 부품으로 고정시켜 무른 암반이나 느슨한 암반 전체를 강화하는 공법.

0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2※※※※※ 공업용수공급 시설공사를 2015. 04. 02. (㉠)◇◇건설 ↑↑↑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1. 구조물 레미콘타설 관련

설계상 배수지 및 가압장 구조물의 레미콘(413㎥)은 일반 레미콘 타설(철근, 진동기 포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현장 시공 시 경제적인 펌프카타설로 시공하여 공사비 12,287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할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 공업용수 관로 설치 관련

건설공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야함에도, 공업용수 관로 설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지구외 구간에 비상관로(D=150mm, L=323m)를 불필요하게 반영하였으며, 또한 계획중인 지구외 비상관로 설치구간은 토지보상 지연과 타 사업의 지방도 진입도로 연결구간 공사착공 지연으로, 관로설치 공사추진이 불가능함에도,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2※※※※※ 조성사업을 2013. 09. 13. ℃℃건설주) ±±±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1. 절토면 비탈면고르기 관련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구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토공의 절취면을 백호우로 작업할 경우 먼고르기를 생략토록 규정되어 있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구 건설교통부) 제2장 토공사(허용오차)에 따라 ±150mm 내에서 비탈면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시공도 백호우를 사용하여 절취와 함께 비탈면을 정리함으로써 비탈면이 자연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읍 ○○○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우우우우우우우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우우우우우우에서는 ○○읍 ○○○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를 2015. 11. 04. (주)■■■ △△△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1. 가시설 설치 관련

우수관거 조립식 PC암거 설치(1공구)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 설치 수량산출에서 강재손료를 구하기 위한 H-형강 중량계산을 130.850Ton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1,308.450Ton으로 잘못 계산(증 1,177.600Ton)하여, 내역서에 적용함으로 인해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2. 가설사무실 설치 면적 관련

설계에 반영된 가설사무실 면적(사무실 350㎡, 창고 100㎡, 숙소 180㎡, 시험실 30㎡)에 대하여, 현장에 설치된 가설사무실 면적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 317㎡(감33), 창고 0㎡(감180), 숙소 46㎡(감134), 시험실 30㎡로 설치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 미 이행으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우우우우우우우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우우우우우우에서는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2016. 06. 17. (주)▲▲건설 ▲▲▲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본 공사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로서, 환경부에서 고시(제2014-33호)된 순환골재 등 골재소요량의 40%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함에도 미 반영하였으며, 골재소요량의 40%이상 순환골재를 사용 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할 요인이 발생됨에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성주군 우우우우우우우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우우우우우우우에서는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2016. 03. 28. ㄱㄱ건설(주) ㄱㄱㄱ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1. 품질관리 시험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설계도서에는 시험·검사대상 공종 및 재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및 현장에서 시공사에 의한 직접시험으로 구분하고, 시공사가 직접 시험불가 시 품질시험을 대행하는 것은 품질시험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본 공사의 품질시험비 단가산출에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품질 시험비 외에 품질시험에 불필요한 건설기술자 인건비, 교육 훈련비, 기타 관련 비용 등 명확한 근거없이 품질관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2. 철근 가공조립 관련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구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철근가공조립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가공 및 조립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공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야함에도, 구조물의 철근 가공조립(31.174Ton)에 대하여 단가가 경제적인 공장가공조립(000,000원/톤당)을 적용하지 않고, 고가인 현장가공조립(000,000원/톤당)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